

우리나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협상 기본원칙 타결

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실 500-5367

- o 우리나라 실무협상단(단장 : 정덕구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)은 '98.1.28 (뉴욕시간) 7개국 13개 외국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합의를 하였음.
- o 주요내용
 - '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1년미만의 단기외화채무 ('97년말 현재 약 250억불)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만기 1, 2, 3년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기로 합의함.
 -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로 하되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인 Libor로 하고, 가산금리는 1년 만기의 경우 2.25%, 2년 만기는 2.50%, 3년 만기는 2.75%로 결정
 - 2-3년 만기의 경우는 6개월 경과후부터 우리 금융기관들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I. 협상개요

1. 협상대표단

o 우리 대표단

- 수석대표 : 김용환 비상경제대책 위원장
- 교체수석대표 : 유종근 대통령당선자 경제고문
- 대표단 고문 : 정인용 국제금융 대사
- 대표 : 정덕구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
- 교체대표 : 변양호 재경원 국제금융담당관
- 법률고문 : Marke Walker (Cleary 법률회사 변호사)

o 실무협상단

- 단장 : 정덕구 재경원 제2차관보
- 단원
 - . 강권석 주 뉴욕재경관
 - . 김준일 경제부총리 자문관
 - . 변양호 재경원 국제금융담당관
 - . 권택균 재경원 외채대책반장
 - . 곽상용 재경원 외화자금과 서기관

- . 문흥성 재경원 국제금융담당관실 사무관
- . 이희수 비대위 기획단 전문위원
- . 이석준 비대위 기획단 전문위원
- . 정보영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
- . 김덕수 산업은행 금융3부장
- . 김윤수 외환은행 국제본부 부장

- 고문 : Robert Davis(Cleary 법률회사 변호사), 김웅한(미시간대 교수)

o 채권은행단 대표(7개국 13개 은행)

- 미국(4) : Citi, CMB, BOA, J.P. Morgan
- 일본(2) : Tokyo-Mitsubishi, Sanwa
- 독일(3) : Deutsche, Commerz, Westdeutsche Landesbank
- 영국(1) : Hongkong-Shanghai (HKSB)
- 프랑스(1) : Societe Generale
- 캐나다(1) : Noba Scotia
- 스위스(1) : SBC Warburg

* New York FRB가 Oberver로 참여

2. 협상기간 및 장소

o 협상기간 : 1998.1.21(수)-1.28(수)

- 제1차 회의 : '98.1.21(수), 14:00-16:00
- 제2차 회의 : '98.1.23(금), 14:00-16:00
- 제3차 회의 : '98.1.26(월), 11:10-17:15
- 제4차 회의 : '98.1.27(화), 09:20-19:00
- 제5차 회의 : '98.1.28(수), 09:30-19:00

o 협상장소

- 뉴욕 Citi은행 본사 및 Shearman and Sterling(채권은행단 법률회사) 회의실

3. 협상추진결과

- o '97.12.21 채권은행단간에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협의 시작
- o '97.12.22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(200억불) 국회 동의
- o '98.1.8 뉴욕에서 채권은행단과의 사전 실무협상 개시
(변양호 국제금융담당관 참석)
- 1.19 주간에 우리측 입장을 발표할 것임을 채권은행단에 통보

- '97. 1.11 협상대책회의 개최
 -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, 임창열 경제부총리 주재 1차 협상대책회의 개최
- '98. 1.14 제2차 협상대책회의 개최 및 기본입장 정리
 -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단기외채 만기연장을 추진
 - 미국, 유럽, 일본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추진
 - 정인용 국제금융대사 : 1.12-16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위스,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 금융감독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 방문
 - 김우석 국제금융국장 : 1.15-16 일본 대장성 및 주요 일본계 금융기관 방문
 - Mark Walker 변호사 : 1.10-14 미국 및 일본 지역, 1.15-18 유럽 지역 금융기관 개별면담
- '98.1.15 우리측 제안서 마련 및 협상대표단 구성
- '98.1.15-17 협상대책회의 수시개최를 통한 협상대책 마련
 - 1.21(수) 채권은행단과의 제1차 협상일정 확정
- '98.1.18 정부협상대표단 뉴욕 도착
- '98.1.18-20 미국정부 및 주요 금융기관 개별 면담
- '98.1.21 제1차 협상 개시(뉴욕 Citi은행 본사 2층 회의실)
- '98.1.21 금융기관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급보증안(150억불) 국회동의
- '98.1.23 제2차 협상 : 기본골격 중심의 협상
- '98.1.26-28 제3차-5차 협상 : 구체적 내용 및 금리조건 협상

II. 협상타결 배경

- 이번 협상타결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가 IMF 프로그램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신뢰가 조성되었기 때문임.

- 외환위기 해결을 위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노력 지지가 큰 기여를 함.
- 노사정의 합의 등 전국민적인 위기타개 의지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.
- o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및 재경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있는 협상대책 및 전략수립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였음.
 - 특히, 외채 구조조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Mark Walker, Robert Davis(Cleary 법률회사 변호사) 및 Corrigan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조언과 활동은 이번 협상을 타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.
- o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은행단 사이에 우리나라의 외환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번 협상타결에 도움을 줌.

III. 주요 합의내용

- o '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1년 미만의 단기외화채무 ('97년말 현재 약 250억불)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만기 1, 2, 3년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기로 합의함.
 - 개별 채권은행별로 만기연장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절차와 조건은 아래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.
- o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로 하되,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인 Libor로 하고 가산금리는 1년 만기의 경우 2.25%, 2년 만기는 2.50%, 3년 만기는 2.75%로 하기로 결정
- o 2-3년 만기의 경우는 6개월 경과후부터 우리 금융기관들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.
- o 대상 외화채무 : '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1년 미만 단기차입금('97년말 현재 약 250억불)
 - 중장기 외화채무, 무역관련 금융, 증권형태의 차입금 및 각주거래(Off-balance)는 제외함.
 - 특정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배주주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은 제외함.
- o 대상 금융기관(Eligible Obligator) : 33개의 시중은행, 특수은행, 지방은행 및 추후 결정될 건전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종합금융회사
 - 은행의 해외지점 및 해외 현지법인도 포함
 - 종금사의 경우에는 경영평가결과 영업내용이 건전(Sound & Viable)하

다고 평가되는 종금사만이 대상

o 외화채무 만기연장 방법

- 기존의 단기 외화채무를 1년, 2년, 3년의 만기를 선택하여 연장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서를 발급
 - . 1년만기 채권은 총 대상채무의 20% 한도내에서만 허용
 - . 지급보증서는 양도 가능토록 함(Transferable loan certificate)

o 원리금 상환

- 원금 : 만기시 원금전액 상환
- 이자 : 매 6개월마다 지급

o 금리 및 조기상환

- 1년 : 6월 Libor+2.25%, 조기상환 없음.
- 2년 : 6월 Libor+2.50%, 6개월 후 조기상환 허용
- 3년 : 6월 Libor+2.75%, 6개월 후 조기상환 허용

* '98.1.29 현재 6월물 Libor : 5.66%

o 표시통화 : 원칙적으로 미달러화로 만기연장을 함.

- 기존 외화채무가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인 경우 대주은행이 원할 경우 기존의 통화로 만기연장을 하는 것을 허용

o 만기연장의 세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권은행단은 지급 금융기관에 제공해 주고 있는 기존 대출을 계속 만기연장(Roll-over)함.

o 외채 만기연장 세부 후속절차

- 기본원칙 합의후 구체적인 계약서 등 문서작성
- 한국정부와 채권단 대표은행이 전 채권은행들에 대해 대상채무의 만기연장을 요청(Exchange Offer)
- 이후 모든 채권은행은 채권교환기간(Exchange Period)내에 희망하는 만기를 명시하여 기존 외화채무 만기연장을 신청함.
 - . 한국정부가 세계 주요도시에서 설명회(Roadshow)를 개최하여 설명
- 이후 대상 외화채무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(Reconciliation Period)
- 실사작업이 끝난 이후 기존의 외화채무를 만기연장하고 정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함.

IV.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방안

- 이번 기본원칙에 대한 협상타결에 따라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종결되
기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임.
 - 세부계약서 작성
 - 정부 및 채권단 대표은행 공동명의 만기연장요청서 발송
 - 개별 채권은행단의 만기연장 신청
 - 개별 국내은행별 채무상황과 채권은행의 채권상황에 대한 세부 대사
작업
 - 지급보증서 발급 및 만기연장 종료
-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채무 만기연장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
지난 12월말 "정부지급보증준비반"을 구성하여 세부업무를 추진할 준비
를 갖추고 있음.
 - 지급보증준비반 : 허용석 과장을 반장으로 한 재경원, 한국은행, 산
은행 및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구성
- 정부의 지급보증시 지급보증 수수료는 해당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
차등화함(수수료율은 추후 결정)

V. 협상타결 의의 및 기대효과

- 단기 외화채무의 상당부분이 1년 이상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됨에
따라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임.
 -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차입금리도 낮아
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외화자금 차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임.
 - . 신용평가기관인 S&P는 이번 외채 만기연장협상이 타결될 경우 신용
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.
 - 특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
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경제
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이러한 대외신인도 회복을 바탕으로 외환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
되므로 외환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는데 기여